

---

# 2026년 시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(일반분과)

---

2026. 2. 27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

정보통신산업진흥원  
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

# 목 차

<b>I. 사업개요</b> .....	3
1. 추진배경 .....	4
2. 추진체계 .....	5
3. 추진일정 .....	7
<b>II. 사업내용</b> .....	8
1. 지원내용 .....	9
2. 자격요건 .....	12
<b>III. 신청방법</b> .....	15
1. 과제신청 .....	16
2. 문의처 .....	19
<b>IV. 과제선정</b> .....	20
1. 선정절차 .....	21
2. 선정기준 .....	23
<b>V. 유의사항</b> .....	25
1. 신청요건 .....	26
2. 의무사항 .....	28
3. 제재사항 .....	31

◇ 2026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은 4개분과[일반/AI반도체/소상공인/글로벌] 분과로 운영되며, 본 내용은 AI바우처 [일반] 분과의 공모안내서입니다.

**I**

---

---

# 사업개요

---

---

# 1

## 추진배경

◇ AI 기술이 필요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구매·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(Voucher)를 지원함으로써 AI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

-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속도가 느린 국내 중소기업 등의 혁신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
  -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활용·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중소·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AI바우처 지원
-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,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산업 지정·지원

### □ 추진경위

- 인공지능 국가전략(관계부처 합동, '19.12)의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과제 일환으로 AI바우처 2020년 신규 도입
- 현 정부 국정과제(21. 세계에서 AI를 잘쓰는 나라 구현)의 일환으로 AI 바우처 지속 추진

### 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-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(법률 제21381호) 제32조(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)
- 정보통신산업진흥법(법률 제21065호) 및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5948호)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1호) 및 부속지침
  - \*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(제191호),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(제2023-226호),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(제2023-226호),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(제2021-159호),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(제190호),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(제2021-161호)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법률 제20426호) 및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4920호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(법률 제20354호) 및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6055호)
- 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20897호) 및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5780호)

## 2

## 추진체계

- (사업목적)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\*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,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을 원하는 AI 솔루션 기업 (이하 '공급기업\*\*')으로부터 구매·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

\* 수요기업 : 인공지능(AI)을 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(분야 무관) 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, 동물병원, 지역소재 보건소

\*\* 공급기업 : 자사 인공지능(AI)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AI 기업(법인)

### <'26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공모 계획(안)>

분과	지원규모 (총 130개 내외 과제)	지원대상	
		수요기업 (*산업분야 제한 없음)	공급기업 (*산업분야 제한 없음)
일반	80개 내외 과제	국내 중소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지역소재 보건소	자사 AI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AI 기업(법인)  *과제 신청 시 공개된 공급기업 POOL 등록 완료 必 (등록방법은 [붙임4] 확인)
AI반도체	20개 내외 과제	일반분과와 동일	
소상공인	20개 내외 과제	국내 소상공인	
글로벌	10개 내외 과제	해외 수요처	

\* 수요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1개과제만 과제 신청 가능하며,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자동 탈락, '20~'25년까지 AI바우처 既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'26년 신청 불가

※ 단, 의료기관은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既 지원받지 않은 진료과/센터는 신청 가능하며, 동일 의료기관 內 1개 진료과/센터만 신청 가능

\* 공급기업은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하며,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(\*1개분과內 2개과제 신청 불가)

※ 단, '25년도 결과평가 '미흡' 이하 과제 공급기업의 경우 통합 최대 1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

※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부터 자동 탈락

※ 분과 내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과제를 우선 탈락시키며, 이후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에 대해 접수순 후순위 탈락 진행

<예1> 일반분과 2개, AI반도체 1개 신청 : 일반분과 2개 중 접수순 후순위 1개 우선 탈락 → 일반 1개, AI반도체 1개 신청 인정

<예2> 일반분과 1개, AI반도체 2개, 글로벌 1개 신청 : AI반도체 분과 2개 과제 중 접수순 후 순위 1개 우선 탈락 → 일반/AI반도체/글로벌분과 3개 과제중 접수 후순위 과제 1개 탈락

※ 본 공모안내서는 [일반] 분과만 해당하며, 그 외 분과의 세부사항은 해당분과 공고의 공모안내서 확인 必

□ (지원금액) 과제\*당 최대 2억원 한도

\* 과제는 반드시 [수요기업+공급기업] 컨소시엄 단위로 신청(수요 또는 공급 기업 단독으로 과제 신청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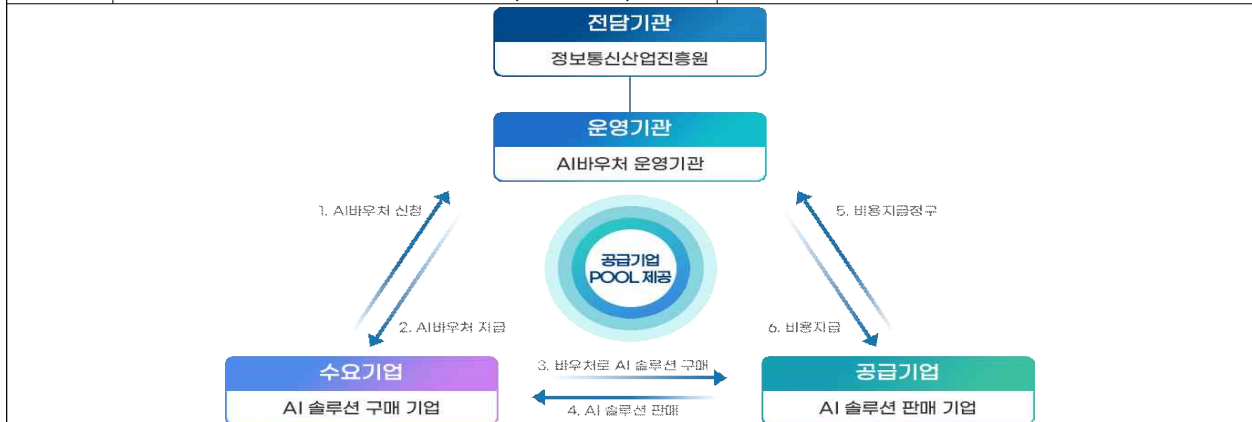
총 사업비 규모,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(운영)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예산 상황, 전담(운영)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(감액) 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

□ (사업기간) 2026.05 ~ 2026.11.30. (약 7개월)

□ (지원방식) 수요기업에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2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, 공급기업에 판매한 AI 솔루션에 대한 대금 지급

<지원방식 및 추진체계>

순서	대상	내용
1	수요기업(주관기관) → AI바우처 운영기관	AI바우처 신청
2	AI바우처 운영기관 → 수요기업(주관기관)	AI바우처 지급
3	수요기업(주관기관) → 공급기업(참여기관)	AI바우처 활용하여 AI 솔루션 구매
4	공급기업(참여기관) → 수요기업(주관기관)	AI 솔루션을 수요기업에 판매
5	공급기업(참여기관) → AI바우처 운영기관	AI 솔루션 판매 비용 지급 청구
6	AI바우처 운영기관 → 공급기업(참여기관)	AI 솔루션 판매 대금 지급



- (수요기업) 제공된 공급기업 POOL\*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컨소시엄 구성 후 AI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
  - \* 공급기업 POOL은 NIPA 홈페이지(www.nipa.kr) 및 AI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(https://pms.ai-voucher.or.kr)를 통해 공지
- (공급기업) 과제 신청 시 반드시 공개된 공급기업(솔루션)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  - ※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은 2026년 과제 참여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기한 내 공급기업 POOL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(必)
- (매칭지원) 수요기업이 수요·공급 매칭 신청서(별첨3)를 제출한 경우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
  - \* 단, 매칭지원은 소요기간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.03.11(수) 15:00까지 메일 (ai-voucher@nipa.kr)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(\*공급기업은 매칭지원 없음)

□ 주무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□ 전담기관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

## 3

## 추진일정

구분	내용	비고
공급기업 POOL 모집(추가모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6.03.16.(월) 17:00까지</li> <li>※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기업 및 기한내 신청하였으나 심사 부적격 공급기업은 2026년 과제 신청 불가</li> <li>※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를 통해 2026.03.20.(금)까지 개별 통보 예정</li> <li>※ 공급기업 등록정보는 AI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 예정 (<a href="https://pms.ai-voucher.or.kr/">https://pms.ai-voucher.or.kr/</a>)</li> <li>※ 공급기업 POOL 1차 미등록 기업은 추가모집 기간에 신청 가능</li> </ul>	AI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( <a href="https://pms.ai-voucher.or.kr/">https://pms.ai-voucher.or.kr/</a> ) ※ 신청방법 [붙임4] 확인
↓		
사업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고 일자 : 2026.2.27.(금)</li> </ul>	NIPA 홈페이지 [사업공고]
↓		
사업설명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6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</li> <li>- 일시 및 장소 : 2026년 3월 중순 / 시간, 장소 별도 공지 예정</li> <li>- 참석대상 : 수요기업, 공급기업, AI반도체기업, 클라우드기업 등</li> <li>* 사전등록 불필요, 현장등록 가능, 주차지원 불가</li> <li>* 사정에 의해 행사장 좌석 및 배포자료가 조기 소진 될 수 있음</li> </ul>	NIPA 홈페이지 [공지사항]
↓		
수요·공급기업 매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요⇔공급기업 간 매칭(자율)</li> <li>* 수요기업이 매칭 신청 희망 시 2026.03.11.(수) 15:00까지 매칭신청서(별첨3)를 메일로 신청 (공급기업은 매칭신청 불가)</li> </ul>	이메일 제출 (ai-voucher@nipa.kr)
↓		
과제 사업계획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제 접수 마감 일시 : 2026.03.30.(월) 15:00</li> <li>전산접수 개시일 : 2026.03.16.(월)</li> <li>접수서류 :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</li> </ul>	전산접수
↓		
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합성검토(4월초), 서류평가(4월중순), 서류합격과제 발표(4월중순, NIPA홈페이지), 발표평가(4월말) 예정</li> <li>*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세부 일정을 개별 통보</li> <li>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</li> </ul>	평가위원회
↓		
최종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비 심의 및 중복성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발표 (5월초 예정, NIPA 홈페이지)</li> <li>협약체결(5월중순) • 협약기간(26.5.중순 ~ 11.30)</li> </ul>	NIPA 및 AI바우처 운영기관
↓		
수행관리 및 이행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(5월~11월)</li> </ul>	NIPA 및 AI바우처 운영기관
↓		
결과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(11월~12월)</li> </ul>	평가위원회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

Ⅱ

---

## 사업내용

---

---

## □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

- (지원항목) 과제 당 정부출연금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지원되며 AI 솔루션비, 인건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·정산 가능

### < 사업비 지원항목 >

인정 항목	불인정 항목
<p><b>&lt;필수신청 항목(1개)&gt;</b></p> <p>① <b>AI 솔루션비</b>(AI 솔루션 납품비) * 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로 편성</p> <p><b>&lt;선택신청 항목(3개) : 필요한 경우만 신청&gt;</b></p> <p>① <b>인건비</b>(AI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) ② <b>용역비</b>(AI 솔루션 테스트 인증을 위한 용역비) ③ <b>임차비</b>(클라우드 임차비: AI솔루션 탑재 및 학습용) * 단순 웹서버용은 불인정</p>	<p>※ 인정 항목 외 모든 비용 불인정 (예시)</p> <p>○ 데이터 수집·구매·정제·가공 등 데이터 관련 일체 비용</p> <p>○ 소프트웨어 구매·임차비 일체</p> <p>○ AI 기술 전문가 자문비 등 일체 자문비</p> <p>○ 하드웨어 구매비, 재료비</p> <p>○ AI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발,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</p> <p>○ 임차비, 회의비, 출장비</p> <p>○ 기술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·훈련비</p> <p>○ 법률·회계 서비스 비용</p> <p>○ 광고판매활동 관련 제비용</p> <p>○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</p> <p>○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관련 비용</p> <p>○ 세금납부</p> <p>○ 사업기간 외 집행금액</p>

※ 인건비는 수요기업 현물출자이거나 공급기업의 AI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인건비로서 급여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,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(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)

※ 주관/참여기관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을 100%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타 정부과제 동시 수행시 참여인력의 참여율이 100%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

※ '용역비'는 사업계획서 내 용역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전담기관(또는 운영기관) 승인 후 집행할 수 있음(필요시 심의를 통해 집행여부 결정할 수 있음)

- (사업비 구성 준수사항) 필수신청 항목(AI 솔루션비)은 정부출연금의 60%이상이어야 함
  - ※ (예시) 정부출연금 2억 신청 시 AI 솔루션비는 1억2천만원 이상 편성 필수
  - ※ 최종 선정 과제의 경우 사업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 총액 및 항목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(데이터 관련 비용 편성 불가) AI바우처 지원사업은 AI솔루션 도입 (수요)/납품(공급) 지원이 주요 목적이므로 과제별 사업비 편성시 “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(수집·구매·정제·가공비 등) 편성 불가”
  - ① 인건비 : 인건비 책정 인력은 데이터 관련 일체의 업무 불인정
    - \* 인건비 활용 내역 증빙자료 제출시 데이터 관련 업무내역 불인정
    - \* 수요 및 공급기업의 현물/현금 인건비 모두 데이터 관련 비용 불인정
  - ② AI솔루션비 : 협약체결 후 제출하는 계약서/견적서 상의 구성항목, 증빙자료 등에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 불인정(해당비용 환수조치)
  - ③ 기타 :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(수집/구매/정제/가공비 등) 편성불가

**<AI바우처 사업의 데이터 관련비용 처리 방안>**

구분	데이터 관련비용 처리방안
데이터 수집	○ 수요기업 → 공급기업 무상제공 원칙(*사업비로 수집비용 처리 불가)
데이터 구매	○ 필요시 수요 또는 공급기업의 자체비용으로 구매(*사업비로 구매 불가)
데이터 정제/가공 등	○ 인건비(현물/현금)를 편성하지 않은 참여인력이 정제/가공 가능 ○ 외부 용역시 수요 또는 공급기업의 자체비용으로 처리(*사업비로 용역 불가)

## □ 민간부담금

-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민간부담금을 필수로 매칭해야 함 \* 단, 수요기업이 보건소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부담금을 제외
- 총사업비(100%) =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(수요+공급)
- 민간부담금 = 수요기업(현금+현물) + 공급기업(현물)
- \*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물과 현금을 모두 매칭해야 하며, 공급기업은 현물만 매칭

### < 사업비 산정구조 (※ 사업비 계산 [별첨2] 참조) >

<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>			
구분	중소기업/의료기관/동물병원 (청년기업인 경우)	중견기업 (청년기업인 경우)	대기업 (청년기업인 경우)
수요기업	20% 이상 (10% 이상)	30% 이상 (10% 이상)	/
공급기업	20% 이상 (10% 이상)	30% 이상 (10% 이상)	30% 이상 (10% 이상)

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기준
수요기업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
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면제(현물로만 매칭 가능) 대상
1) 청년기업 : 수요기업 대표자(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)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(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준) 2) 비영리기관 :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현금면제(현물만으로 매칭 가능) 3) 지역소재 기업/기관 :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 등록증 상 본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역소재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인 기업

- \* 수요기업 중 현물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간부담금 일부 또는 전체를 현금 부담 가능
- (부가세 부담)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외 공급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를 별도 부담하여야 함
  - \*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로는 세금(부가세) 비용집행이 불가하니 과제 선정 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 사전 점검 필요
- 동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

## □ 수요기업 자격요건

- (지원대상)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되는 경우 지원가능
  - \* 해외기업(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),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%이상의 기업은 과제 신청 불가 (기업 대표가 외국인 신분으로 50%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제외)
- ① 국내 중소·중견기업(법인에 한함,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)
  - ※ 법인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
- ②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  - ※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상 의원·병원·요양병원, 종합병원을 의미  
(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필수)
- ③ 수의사법 상 동물병원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  - ※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출
  - ※ 단,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제출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참여 허용
- ④ 지역소재 보건소
  - ※ 보건소는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 제외)을 제외한 지역소재 보건소만 신청 가능  
(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제출 필수)
- AI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AI바우처 지원사업에 과거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
  - ※ 의료기관은 수요기관 선정이력에 동일한 의료기관, 동일 진료과/센터의 경우는 사업 참여 불가(동일한 의료기관이나 선정이력 없는 진료과/센터는 가능)
- '20~'25년 AI바우처 사업수행 중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'26년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불가
  - ※ 단, 100% 공급기업의 문제로 인하여 중도포기 된 수요기업은 참여 가능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, 수요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1.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2. 최근 결산기준('25)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
 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'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, 협약시 '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(완전자본잠식)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
  - ※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
    - 1) 대표이사(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)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1호에 의거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
    - 2) 창업·법인설립 3년차 미만(접수마감일 기준)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
    - 3)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3.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,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,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
4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,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/화외/법정관리/휴업 상태, 국세·지방세 체납(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)인 경우
5. 최근 3년간('23~'25)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·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

## □ 공급기업 자격요건

- 공개된 공급기업 POOL[붙임5]에 등록된 자체 AI 솔루션 보유 국내기업(법인에 한함, 접수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시 인정)
  - ※ 해외기업(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), 해외기업의 국내지사 및 해외 지분이 50%이상의 기업 및 기업 대표가 외국인 신분으로 50%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제 신청 불가
  - 미등록된 공급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을 위해 [붙임4]에 따라 AI바우처 공급기업 POOL에 신청을 진행해야 함
  - 의료기관의 인공지능 솔루션 지속 사용을 위해 식약처 인허가 완료된 AI 솔루션 및 과제 기간 내에 인허가 발급이 가능한 AI 솔루션 우대
- 공급기업은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AI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
  - 단, '25년 결과평가 '미흡' 이하 과제의 공급기업은 전체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

- 결과평가 시 "매우미흡" 또는 "미흡" 기업 중 제재심의 결과 사업참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제재기간 동안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
-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,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1.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2. 최근 결산기준('25)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
 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'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, '협약시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(완전자본잠식)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
  - ※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
    - 1) 창업·법인설립 3년차 미만(접수마감일 기준)\*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
    - 2) 대표이사(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)가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
    - 3)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3.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,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,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
4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,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/화의/법정관리/휴업 상태, 국세·지방세 체납(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)인 경우
5. 최근 3년간('23~'25)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·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

**Ⅲ**

---

## **신청방법**

---

## □ 신청방법

- (신청대상) II-2.(수요·공급기업)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수요기업(주관 기관)과 공급기업(참여기관)이 컨소시엄으로 신청

- 과거 A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2026년 수요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기업은 선정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
  - 법인등록번호/사업자등록번호/대표자명(생년월일)을 통해 동일기업인 경우 제외
  - 단, 의료기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 진료과/센터의 경우 제외
- 수요기업은 A바우처 지원사업 전체 4개 분과 통합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  - 의료기관은 동일 의료기관라도 旣 지원 이력이 없는 진료과/센터는 신청 가능
  - 의료기관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.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 과제 신청 불가
  -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(접수시간) 과제는 자동탈락
- 공급기업은 A바우처 4개 분과 통합 최대 2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하며, 분과별 최대 1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
  - 단, '25년도 결과평가 '미흡' 이하 과제 공급기업의 경우 4개 분과 통합 최대 1개까지 신청 가능
  -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(접수시간) 과제는 자동탈락
  - '매우미흡' 과제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과제 신청 시 적합성 검토에서 자동탈락

- (신청기간) 2026.03.16.(월)[전산접수 개시일] ~ 2026.03.30.(월) 15:00까지

\* 15시00분00초까지만 인정

- (신청분과) 일반분과 (※다른 분과에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)

- (신청방법) NIP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

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nxt.nipa.kr/indexBms.do>) →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전산접수 (\*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)

※ NIPA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매뉴얼 참고

## □ 제출서류

구분	작성양식	제출서류		비고	
		수요기업	공급기업		
1	사업계획서	서식1호	○	X	
2	과제신청 총괄 현황표	별첨1 (엑셀파일)	○	○	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내용까지 취합하여 제출
3	사업자등록증	고유양식에 따름	○	○	수요/공급 각각 제출
4	법인등기부등본	고유양식에 따름	○	○	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(그외 비공개)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	고유양식에 따름	○	○	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*유효기간 : 접수마감일 포함
6	표준재무제표증명 *최근 3년 ('22~'24년) *선정과제는 협약 전 '25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, '25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*상장 진행예정 기업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제출	고유양식에 따름	○	○	'25.1.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*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
7	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*벤처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	고유양식에 따름	○	○	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*유효기간 : 접수마감일 포함
8	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	서식2호	○	○	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
9	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	서식3호	○	○	수요/공급 각각 제출
10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서식4호	○	○	수요/공급 각각 제출
11	최근 3년간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	서식5호	○	○	수요/공급 각각 제출
12	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	서식6호	○	○	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
13	AI SaaS 사용확약서 AI SaaS 솔루션 설명자료	서식7호	○	○	확약서-수요 설명자료-공급
14	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	고유양식에 따름	○	X	동물병원
	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	고유양식에 따름			의료기관
	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	고유양식에 따름			지역보건소 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
15	솔루션에 대한 의료 인허가증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 *AI솔루션 관련 인허가증	고유양식에 따름	X	○	해당 공급기업만 제출 (식약처 인허가 관련 자료)

- 모든 제출서류는 'PDF' 파일로 제출하며,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
(단, "[별첨1]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"는 엑셀파일로 제출) (원본대조필 불필요)
- 제출서류 파일명 : "구분번호.구분명\_기업명(수요)\_기업명(공급)" \*(예시)1.사업계획서\_수요기업명\_공급기업명
-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 
최종 1개 파일로 제출 \*(예시) [공급기업\_남산플랫폼]폴더, [수요기업\_한강시스템]  
폴더]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[첨부자료\_한강시스템]로 제출

- ※ 공급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요기업이 과제 신청 시 일괄 제출  
(공급기업은 공급기업 POOL 등록 시 既 제출한 서류도 AI바우처 지원과제 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)
-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NIPA가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
- ※ 위의 첨부 서류는 과제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,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

-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개된 공급기업 POOL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
  - ※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불가(적합성 검토 탈락)
-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에 적용할 'AI 솔루션'은 공개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AI 솔루션으로만 신청 가능
-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 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며 계속 “저장” 및 “제출” 을 클릭

### 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 시 주의사항

- 과제접수는 수요기업이 하여야 하며,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
(※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)
- 사업계획(신청)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
- 전산접수는 사업계획(신청)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, **최종'제출'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접수 완료 불가**
  - \* 전산접수 완료 후 **접수번호**를 부여받아야 함
-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“저장” 버튼 클릭후 바로 “제출” 버튼도 클릭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
- **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**
- 마감시간까지 “제출”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과제는 “저장”을 하였어도 접수 불가
  - \*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※ **전산접수 마감시한 : 2026. 03. 30.(월), 15:00까지(15시00분00초까지만 인정)**

-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
  - ※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수요기업이 제출하며, 서류 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

**□ 사업관련 문의처**

- 대표전화 : 043-931-5760 (\*이메일 문의처 : [ai-voucher@nipa.kr](mailto:ai-voucher@nipa.kr))
- NIPA 담당자 : 강동현 수석(043-931-5757, [dhkang@nipa.kr](mailto:dhkang@nipa.kr)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채정열 수석(043-931-5763, [jychae@nipa.kr](mailto:jychae@nipa.kr)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대영 책임(043-931-5767, [ldy@nipa.kr](mailto:ldy@nipa.kr))

\* 유선문의 가능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(\*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**□ 시스템관련 문의처 : 070-5151-8239**

- \* "시스템관련 문의처"는 전산접수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,  
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"사업관련 문의처"로 문의 바랍니다.

# IV

---

## 과제선정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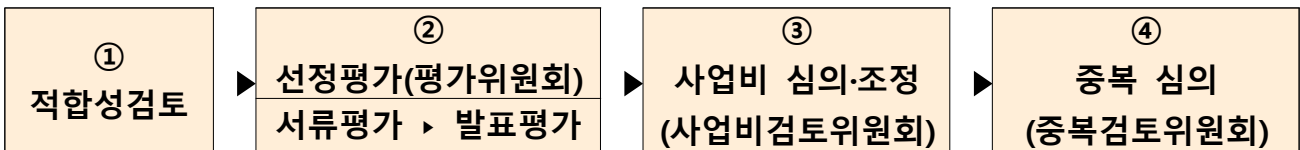
# 1

## 선정절차

### □ 선정절차

- 제출서류 적합성검토 및 서류·발표 평가(평가위원회)를 통해 과제 선정 후, 사업비 심의·조정(사업비검토위원회), 중복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

< 선정 절차 >



#### ① (적합성 검토) 기본요건(신청자격, 제출서류, 참여제한 여부 등) 검토

##### 적합성 검토 탈락기준

- 공급기업 POOL(붙임5) 미등록 공급기업과 매칭하여 과제 신청하는 경우
- AIBAU처 지원사업 참여제한중인 수요 및 공급기업이 신청하는 경우
- 과거 AIBAU처 지원받은 수요기업(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/센터)이 '26년 AIBAU처 수요기업으로 재신청 하는 경우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(접수시간) 과제탈락(분과 우선적용)
- 동일한 기업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중복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(접수시간) 과제탈락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접수마감일 기준 **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, 기업대표, 총괄책임자**
-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등 본 공모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공모안내서 자격요건 중 사업에 참여할수 없는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

※ 지원과제수 초과, 중복신청 등 적합성 검토는 AIBAU처 지원사업 쏘분과 통합 고려하여 진행

#### ② (서류평가 및 발표평가)
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

- ※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, 발표평가만 진행될 수 있음
- (발표평가) 주관기관(수요기업)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
  - ※ (예시) 총 30분 발표의 경우 발표(15분 내외), 질의응답(15분 내외)으로 운영
- ③ (사업비 심의)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결과(순위)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
- ④ (중복성 심의) AI바우처 신청 과제 중 타기관의 AI관련(글로벌분과의 경우 해외진출 관련) 지원사업과 유사·중복검토위원회를 통해 중복 과제 여부 심의

## 2

## 선정기준

- (평가위원회 구성) 인공지능 전문가, 각 분야별 기술·비즈니스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
- (선정방법) 평가위원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(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)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
  - ※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 (단,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)

### < 선정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 >

구분	평가항목 및 내용	
서류 · 발표 평가 (100)	① 과제 목표 타당성 (20)	○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 과 필요성 ○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○ 최종목표, 성과목표, 성능지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
	②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(20)	○ 추진계획(목표, 추진방법, 추진일정 등)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○ 수요기업에 도입하는 AI 솔루션 및 적용계획의 적정성 ○ 양질의 데이터 보유 현황 및 수집 계획
	③ 사업 효과성 (20)	○ 경제적 파급효과(매출 증가, 투자유치, 수출 등) ○ 현장 혁신 효과(생산성 향상, 품질개선, 비용절감 등) ○ 일자리 창출 직·간접 효과 ○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기업 성장가능성 등 사업효과성
	④ 수요기업 역량 (20)	○ 과제 수행 역량(도입환경, 데이터 보유 현황, 참여인력 구성 등) ○ 사업 수행의지의 적극성 및 구체성 ○ 향후 AI 솔루션 도입 제품·서비스 활용계획의 구체성
	⑤ 공급기업 역량 (20)	○ 과제에 적용할 AI 솔루션의 우수성 ○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 적정성 ○ 수요기업 적용 AI 솔루션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
가점 항목	① 청년기업 (최대 1점)	○ 청년기업(대표자 중 1인 점수마감일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)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0.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부여
	② 지역소재기업 (최대 2점)	○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역소재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인 기업의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1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2점 부여
	③ AI SaaS 서비스 도입 (1점)	○ 수요기업의 'AlaaS 솔루션' 사용 협약서 및 공급기업의 AlaaS 설명 자료 제출시 가점 1점 부여 - CSP 계약서 등 증빙 필수
감점 항목	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(최대 1점)	○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수요 및 공급기업에 각 0.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감점 부여
※ 가감점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에 모두 적용되며, 가감점 적용 후 최종점수*가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순서대로 최종 순위를 산정함 (*최종 점수기준 : 평가항목별 최고,최저 제외 산술평균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과제 목표 타당성(총20점)이 높은 순</li> <li>2)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(총20점)이 높은 순</li> <li>3) 사업 효과성(총20점)이 높은 순</li> <li>4) 수요기업 역량(총20점)이 높은 순</li> </ol> (* 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)		

- (가점사항) 청년기업, 지역기업, AlaaS 솔루션 사용에 가점 부여
  - (청년 가점)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서류 및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(최대 1점 : 수요 0.5, 공급 0.5)
  - (지역 가점)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지역소재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인 기업의 경우 서류 및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(최대 2점 : 수요 1, 공급 1)
  - (AlaaS 솔루션 사용 가점) 클라우드 기반 AI솔루션(AlaaS) 전문기업 육성과 클라우드 전환 촉진을 위함이며, 'AlaaS 사용확약서[서식7호 양식] 및 AlaaS 설명자료를 제출 기업에 서류 및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(최대 1점)

V

---

## 유의사항

---

## □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

-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,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,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,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
- 특히,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(수요) 및 참여(공급)기관의 총괄(공동) 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,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 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
  - ※ 전산접수시스템, 사업계획서(한글), 총괄현황표(엑셀) 모두 총괄책임자 이메일주소 최종 확인 요망
- AI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시 공급기업은 반드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POOL에 등록된 AI 솔루션으로만 과제 신청 가능
- 수요기업이 보건소인 경우, 서울/경기/인천 제외한 지역소재 보건소만 신청 가능
-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중복 신청 불가
- 선정평가(서류 및 발표) 결과는 개별통보되지 않으며, NIPA 홈페이지 '공지사항'에서 '과제 신청 접수 번호'로 확인해야 함
-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(평가방법)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

## □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

-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
-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특수관계인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

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)에 해당되는 경우(접수마감일 기준)인 경우

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-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既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·유사한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

## □ 기타 주의사항

- 사업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의 솔루션 제공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솔루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직전년도 결과평가 1개 과제 이상 '미흡' 또는 '매우미흡'인 공급기업은 선정평가 시 해당 내용이 평가위원에게 공개됨
-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(정부지원금 등)는 축소·조정 및 비목별 추가/변경/삭제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
※ (심의위원회 제척) 인공지능 전문가, 각 분야별 기술·비즈니스 전문가 등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,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,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

## □ 사업일반

- 공급기업은 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)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, 이렇게 개설된 계좌에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선금 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하여야 함
- 공급기업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, 수요-공급기업 간 계약서\*, AI솔루션 견적서, 견적 증빙, 라이선스 정책 등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  - ※ 수요-공급기업간 매출, 유지보수,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민간 자율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
- AI솔루션비 및 인건비의 구성항목, 견적서, 견적 증빙자료 內 데이터 관련 일체의 비용(수집·구매·정제·가공비 등) 편성 불가
-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
-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AI솔루션 라이선스 교육, AI 솔루션 테스트 교육, 부정수급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NIP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
- 과제진척현황,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, 현장실사, 결과평가, 정산 등을 진행하며,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
-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자체 시험 결과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한 테스트 결과서\*를 필수 제출해야 함
  - \* 단, 제출 테스트 결과서에는 성능목표, 학습/테스트데이터, 사용 알고리즘, 사용언어, 개발프레임워크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KOLAS 인증 기업의 테스트결과서만 허용
  - \*\* 기한 내 미제출 시 참여제한,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
- 과제를 수행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출, 수출, 특허, 고용창출, 제품 상용화 등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하며,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, 홍보영상,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

## □ 정부기관의 지원과제에 대한 정보 관리를 자료 제공

- (데이터 문제해결은행 플랫폼) 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에 작성·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, 결과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 및 데이터, AI·데이터 활용사례는정부 정책에 따라 자료 통합 관리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(K-DATA의 AI·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등)
- 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)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·중견기업의 과제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'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' 등록됨

## □ 개인정보보호

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·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·고시, 지침·고시 해설, 가이드·자율점검 등 제반의무\*를 준수해야 하며 법·규정 위반時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·기관에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이 있음
  - ※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(www.pipc.go.kr)와 개인정보보호포털(www.privacy.go.kr)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
-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\*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'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\*\*'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
  - \*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,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,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,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/민감정보/가명정보/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
  - \*\*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(서식 6호)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△(단계점검)

기획설계, 개인정보 수집, 개인정보 이용·제공, 개인정보 보관·파기 △(상시점검) AI 서비스 관리·감독,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, 개인정보 자율보호, AI윤리점검 이행

- 특히, 개인정보 위탁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,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·점검·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
- 선정기업(수요,공급)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(담당자)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
  - \* 단, 사정에 의해 협약 시 미제출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필수 이수해야 함
-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(개인정보 전문가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)를 통해 사업 중간·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-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
-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
-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,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, 개인정보 영향평가, 개인정보 공개,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함
-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, 참여 제한, 사업비 환수, 사법당국 고발조치,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
- 사업 제안기관·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실증랩(안심존)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\* 시 선정 평가(서류 및 발표평가) 감점
  - \*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·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

### □ 부정수급 관련 제재
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,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,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
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(인력)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
-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
-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
-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
-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
-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
- 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,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-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
  - \*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,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, 클린 센터를 통한 신고접수,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
-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”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
-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AI바우처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는 국번없이 043-931-5760번 또는 이메일(ai-voucher@nipa.kr) 상시 신고 접수

## □ 사업수행 관련 제재

-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 -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의 규정을 준용함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과제 수행중 또는 과제 종료 후 5년간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가할수 있음

구분	제재부가금 부가율	예시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	500%	3천만원 부정 청구 시 제재부가금은 1억5천만원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	300%	3천만원 과다 청구 시 제재부가금은 9천만원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(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·법인·단체의 기준·규정·사규를 포함한다)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	200%	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6천만원

###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

-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환수할 수 있음
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중단,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
- 인공지능 솔루션, 기술인력,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
-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결과평가 시 “미흡” 또는 “매우미흡\*” 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\* “매우미흡” 공급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